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2. 24.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2월 17일
- 회부일자 : 1994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99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94. 2. 24.)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국장 유 병 현)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등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이 도 주관하에 지방재정과 연계,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집약화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업,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사업 전환 및 이양, 창업지원사업, 소기업지원사업 등 구조조정 사업추진과
- 기업구조조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것임
 - 가. 기금조성근거법 명시 (안제1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중앙정부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 (안제4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과 자금계정 신설 (안제5조)

-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위탁근거 마련

라.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관리 운용사항 신설

(안제17, 18, 19, 20, 21조)

- 응자대상, 응자절차 및 응자조건, 응자금의 상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마.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안제24조)

- 위탁기관 기금관리 상황보고 및 이에 대한 검사, 조사규정 신설

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안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을 관리운용하고 있었으나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94. 1. 7자로 제정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의 지원사업도 주관하에 지방재정과 연계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동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집약화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업 자동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문답변요지 : 없음

5. 토론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참석 7, 찬성 7)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 신. 구조문 대비표